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자료집 ①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자료집 ❶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목차

- 08**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23** 아동매매 · 아동매춘 ·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29**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33**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현황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채택되어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은 범세계적 국제인 권조약으로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아동의 인권 분야에서 새 지평을 연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권리를 총망라해 명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을 위해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해 세계 192개국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협약의 내용이 아직 우리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05년 9월 국내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들이 모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의 정신을 지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자는 취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를 창립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는 협약의 주창 및 홍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검토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처방안 촉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 제출 시 민간보고서 제출, 한국정부가 유보한 3개 조항의 조속한 철폐 촉구, 회원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활동 지원 등 어린이 권익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자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협약 전문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한국NPO연대가 펴낸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과 그 후 채택된 아래의 2가지 협약 선택의정서 전문을 원 내용을 충실히 살리면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장과 용어로 재정리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2006년 8월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회장 **박 동 은**

| 한국정부 비준상황 |

- **유엔아동권리협약** : 1991년 11월 20일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3개 조항 유보 비준)
 - 3개 유보조항
 - 제9조 3항 : 아동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 제21조 가항 : 권위 있는 정부당국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양허가제도
 - 제40조 나-(5)항 : 범법행위를 한 아동이 상급사법당국의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 상소권 보장제도
- **선택의정서**
 -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 2004년 9월 24일 비준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2004년 9월 24일 비준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0년 10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전문

협약의 당사국들은 다음의 전제에 동의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합의했다.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세계 평화와 정의, 자유의 성취는 모든 인류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데 달려 있음을 고려한다.

유엔 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하는 한편 충분한 자유를 보장받는 가운데 사회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했음을 유념한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한다.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한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특히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위한 천연의 환경이므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함을 확신한다.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아동은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한다.

아동은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유엔헌장이 선언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고려한다.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한다.

아동권리선언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출생 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한다.

국내외 가정위탁과 입양문제를 명시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유엔 최소 표준규약(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함을 인정한다.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아동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 1 부

제 1 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 2 조

1. 협약의 당사국(이후 ‘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당사국은 아동이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현지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들이 아동의 능력과 발달정도에 맞게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제 8 조

1.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아동이 자신의 신분요소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 쪽이나 양 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부모나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 포함)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아동과 부모가 분리된 경우, 당사국은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때 부모나 아동, 다른 가족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 의뢰가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이나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의 제한은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 부합되는 범위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가능하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제 14 조

1.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민주사회의 법체계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1.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의 중요한 기능을 인정해 아동이 특히 자신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아동에게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나. 문화적, 국내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류·보급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 라. 대중매체가 소수집단이나 원주민 아동이 겪는 언어상의 어려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해 아동복지에 유해한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양 쪽 부모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공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무엇이 최상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법정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과 시설,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자녀들이 아동보호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을 박탈 당했거나 아동에게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적 보호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위탁양육, 회교법의 카팔라(Kafalah, 빈곤아동, 고아 등을 위한 회교국의 위탁양육방법), 입양,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까지를 포함한다. 양육 방법을 모색할 때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중시해야 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후견인과 관련된 아동의 신분상태를 고려해 입양의 허용여부와 필요한 경우 부모나 친척 등 관계자들이 협의해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동의를 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한다.
- 나. 해외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을 구하지 못했거나 모국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다. 해외입양아가 국내입양아에게 적용되는 보호와 기준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라. 해외입양의 경우 양육지정이 입양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 적절한 상황이 되면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그러한 체제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의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다른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규정된 아동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협약 및 해당국가의 국제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누림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자격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난민아동의 부모나 가족 추적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아가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가 장려되는 여건에서 여유롭고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장애아의 권리를 인정하며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동과 부모,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맞는 지원이 신청에 의해 해당아동과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3. 장애아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부모 등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해 가능한 한 무상 지원을 해야 하며, 아동이 교육과 훈련, 의료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안을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 등 개인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아를 위한 재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 보급과 이용을 비롯해 예방의학분야,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치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영아와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 다.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환경오염의 위협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안전한 식수 보급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부모와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지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 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부모교육,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아동이 보호나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경우 해당아동은 치료상황을 비롯해 양육 지정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산과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행하는 혜택 신청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재정 범위 안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부모나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지원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가 아동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협약 가입이나 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세우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거나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라.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지식 및 현대적인 교육체계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문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한 존중
 -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2. 이 조 제1항에 대한 준수와 교육기관의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소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위협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 보장을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여러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규정들을 확립해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고용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 가. 아동을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춘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가. 어떤 아동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 나.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아동의 나이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해 가족과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지원 및 다른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삼가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는 경우 최연장자부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무력분쟁 하의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고문,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해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타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하고, 아동의 나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맡게 될 건설적 역할의 가치를 고려하는 등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이유로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않는다.
- 나.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
 - (2) 피의사실에 대한 변론 준비와 제출에 있어 직접, 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적 지원을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법률적 지원 및 다른 적절한 지원 하에 법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통해 지체 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이 없는 한 특별히 아동의 나이나 상황, 부모나 후견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는 것과 대등한 조건으로 자신을 대변할 증인의 출석과 심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결 및 그에 따른 모든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충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루는 조치
4. 아동복지측면에서 적절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 및 위법행위에 맞는 처우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 직업훈련계획, 기타 대체방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제 41 조

이 협약의 규정은 아동권리 실현에 보다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다음 법률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제 43 조

1. 이 협약의 의무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달성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명망 높고 능력을 인정받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균형 있는 지역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해 당사국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 1인을 위원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전에 유엔사무총장은 2개월 내에 후보자를 지명해 제출하라는 서한을 당사국에 발송해야 한다. 그 후 사무총장은 후보를 지명한 당사국 표시와 함께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해 협약당사국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5. 선거는 유엔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결 정족수로 하고, 회의에 출석해 투표한 당사국 대표들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단,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특정 이유로 인해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유엔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되고 검토된다.
11.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서의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위원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 실행을 위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보장과 관련해 이루어진 진전상황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가.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의무 이행 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해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시민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5 조

-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 가. 전문기구,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 이행과 관련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해 각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 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다른 유엔기구들에게 그들의 활동 분야에 한해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국이 기술적 자문 지원 요청, 또는 그 필요성을 명시한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해당보고서를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그 외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문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것을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해 접수한 정보에 기초해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 4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제 47 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유효하며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8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9 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 해당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후원으로 동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며 승인절차를 위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국은 계속해서 이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받아들인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제 51 조

1. 유엔사무총장은 비준이나 가입시 각 당사국이 유보한 조항의 문서를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배포해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유보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문을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보조항 철회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 52 조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문을 접수한 날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제 53 조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을 보관하는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 54 조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정본으로 동등하게 만들어진 이 협약의 원본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했다.

아동매매 · 아동매춘 ·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02년 1월 18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이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다음 전제하에 선택의정서 조항들에 합의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목적과 각 조항의 이행, 특히 제1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이행 증진을 위해, 아동매매 · 아동매춘 · 아동포르노그래피로부터 아동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 아동의 교육에 유해하거나 아동의 건강과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도덕적 · 사회적 발달에 유해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한다.

아동매매 · 아동매춘 ·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국제적 이동이 만연되어 있고 증가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실제로 아동매매 · 아동매춘 ·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촉진하며, 아동에게 특별히 위험한 섹스관광이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여자어린이들을 비롯해 특별히 취약한 집단의 어린이들은 보다 심각한 성 착취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성 착취의 피해자 중 여자어린이가 절대다수임을 인식한다.

인터넷 및 기타 신기술을 통한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이용가능성 증대를 우려하며,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와의 전투를 위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와 특별히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배급, 수출, 전송, 수입, 의도적 보유 및 광고를 전세계적인 범죄로 다룰 것을 촉구한 당시 결론을 상기하며, 정부와 인터넷 산업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및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개발과 빈곤, 경제적 불균형,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 비정상적인 가족, 교육의 결핍,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성차별, 성인들의 무책임한 성 행태, 유해한 전통적 관행, 무력분쟁, 아동의 거래 등 발생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아동매매 · 아동매춘 · 아동포르노그래피가 퇴치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동매매 · 아동매춘 ·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수요 감소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관계자간의 범세계적인 유대관계 강화 및 각 국가의 법집행 개선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아동의 보호 및 국가 간 입양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 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부모의 책임 및 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관할, 적용법률,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및 즉각적 제거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82호를 포함해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법률문서의 규정들을 주목한다.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약속의 증거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의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및 1996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 방지를 위한 세계대회가 채택한 선언과 의제, 이 문제와 관련해 관계된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여러 결정 및 권고들의 이행 중요성을 인식한다.

아동의 보호 및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해야 한다.

제 2 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아동매매란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대가를 받고 아동을 어느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하는 모든 행위와 거래를 의미한다.
2. 아동매춘이란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 관련 활동에 이용함을 의미한다.
3. 아동포르노그래피란 그 방법을 불문하고 아동이 실제 또는 모의로 노골적 성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행위와 활동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행위자가 개인인지 조직인지 불문하고 확실하게 형사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가.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매와 관련해,

㉠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다음 목적을 위해 아동을 제공, 운반, 인수하는 행위

① 아동에 대한 성 착취

② 영리를 위한 아동의 이송

③ 아동에 대한 노동 강요

㉡ 적용 가능한 입양 관련 국제법률문서 위반 및 아동입양에 관한 동의를 부당하게 유도하는 중개자의 행위

나.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춘을 위해 아동을 제공하고 획득, 조달, 공급하는 행위

다. 제2조에 정의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제작, 배급,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 하에서 이러한 행위의 미수 및 공모, 참여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

3.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절한 형벌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자국법 규정 하에서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법률관계자들의 책임을 확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의 법 원리 하에서 법률관계자의 이러한 책임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5. 당사국은 아동의 입양에 있어 모든 관련자가 적용 가능한 국제법률문서를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1. 각 당사국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가 자국 영토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 경우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범죄용의자가 자국민이거나, 자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자일 때
 - 나.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
3. 각 당사국은 범죄용의자가 자국 영토 내에 있고 해당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그를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이 의정서는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형사 관할권을 존중한다.

제 5 조

1.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들은 기존에 체결된 당사국간 범죄인 인도협정에 인도가능범죄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추가로 체결되는 당사국간의 모든 범죄인 인도협정에도 이러한 범죄들을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가능범죄로 포함시킨다.
2. 범죄인 인도협정을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하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이 의정서를 범죄인 인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피요청국의 법률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범죄인 인도협정을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은 피요청국 법률에 따르는 조건하에서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들 당사국간 인도가능범죄로 인정해야 한다.
4. 당사국간 범죄인 인도의 목적상 제3조 제1항의 범죄는 발생장소에서 뿐 아니라, 제4조에 따른 관할권 확립이 요구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었으나, 피요청국이 범인의 국적을 근거로 인도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해당 국가는 기소를 위해 이 사건을 담당기관으로 회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상호간에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해 제기된 조사 또는 형사상 절차,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증거의 수집 지원을 포함해 최대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2. 당사국은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사법공조조약 또는 기타 협정에 따라 이 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약이나 협정이 없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상호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당사국은 국내법 규정 안에서

가. 적절한 경우 다음의 물건들을 압수 및 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이 의정서가 규정한 범죄를 행하거나 조장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나 자산, 도구
- ㉡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어진 수익

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가) ㉠에서 규정된 물품이나 수익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라는 요청이 오면 이를 실행해야 한다.

다. 이러한 범죄를 위해 사용된 건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조

1. 당사국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 의정서가 금지한 행위의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가. 아동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아동 증인에 대한 특별조치를 포함해 이들의 특별한 요구를 인정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나. 아동 피해자에게 그의 권리와 역할을 비롯해 절차의 범위와 개시시간, 진행 및 사건의 처분에 관해 통지한다.

다. 아동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서는 국내법에 맞는 방법으로 아동의 의견과 요구, 관심사항이 제시되고 고려되도록 한다.

라. 법절차 전반을 통해 아동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아동 피해자의 사생활 및 신원을 보호하고, 국내법에 따라 아동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위험이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바. 필요한 경우 아동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아동을 위한 증인들이 위협 및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한다.

사. 사건의 처리를 비롯해 아동 피해자에게 보상을 명하는 명령이나 결정 집행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다.

2. 당사국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이 확인을 비롯한 형사조사의 개시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사법제도를 통해 이 의정서에 기술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를 다룸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금지한 범죄의 피해자들과 관련해 일하는 자들에 대해 적절한 훈련, 특히 법률적·심리적 훈련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재화에 관여된 인물이나 조직의 안전과 성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6. 이 조의 어떤 내용도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에 불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을 위한 법률과 행정조치, 사회정책 및 계획을 채택하거나 강화, 시행, 보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한 정보제공, 교육, 훈련을 통해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조치와 악영향에 대해 아동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이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특별히 아동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과 지역사회가 국내외적 정보 제공과 교육,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사회에 완벽히 복귀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들이 법적 책임자들로부터 입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차별 없이 요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홍보물의 제작 및 유포 금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1. 당사국은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아동 섹스관광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저지하고 적발, 조사, 소추 및 처벌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 및 지역적·양자간 협정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관계당국과 국내 및 국제 비정부기구, 국제기구간의 국제협력 및 조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사회 복귀 및 송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아동 섹스관광에 대해 아동을 취약하게 만드는 빈곤과 저개발 등 근본원인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4. 원조가 가능한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간 및 지역적, 양자간,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기술적 원조를 비롯하여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아동권리 실현에 보다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다음 법률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12 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서 발효된 지 2년 내에 이 의정서의 규정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최초보고서 제출 이후 각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의 서명을 위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받아야 유효하며, 협약의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14 조

1.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협약의 다른 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의정서 폐기는 사무총장이 당해 통지문을 접수한 날부터 1년 후 발효한다.
2. 위와 같은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해 당사국을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해당폐기의 발효 이전에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검토 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를 방해할 수 없다.

제 16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후원으로 동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며 승인절차를 위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국은 계속해서 이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제 17 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정본으로 동등하게 만들어져 유엔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유엔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공인된 사본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에 전달해야 한다.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02년 2월 1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이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다음 전제하에 선택의정서 각 조항에 합의했다.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총체적 약속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차별 없이 아동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과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발달과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

무력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유해하고 광범위한 영향과, 분쟁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 및 발전 등에 미칠 장기적 결과를 우려한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삼는 행위,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많이 있는 장소를 포함해 국제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비난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채택과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징집이나 소집 행위, 국내외적 무력분쟁시 아동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가 협약의 목적상 아동을 아동관련법에 의해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아동의 군대 징집연령 및 적대행위 참가연령을 높이는 이 선택의정서가 아동과 관련된 행동을 함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는 원칙을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무엇보다도 1995년 12월의 제26차 국제적십자사 회의가 18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분쟁당사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음을 주목한다.

1999년 6월 무력분쟁에의 아동의 강제적, 의무적 징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즉각적 제거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82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가 적대행위에 있어 국경을 넘나들며 아동을 징집, 훈련,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비난하며, 이와 관련해 아동을 징집, 훈련, 활용하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부여한다.

무력분쟁의 각 당사자는 국제인도주의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다.

이 의정서는 제51조를 포함한 유엔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 및 인도주의법 관련규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한다.

특별히 무력분쟁 및 외국점령 기간 중에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폭적인 존중과 적용가능한 인권 조약 준수를 기반으로 한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가 아동 보호에 꼭 필요함을 유념한다.

경제적·사회적 지위, 성별 때문에 이 의정서가 금지한 징집이나 적대행위에 보다 취약한 아동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한다.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되는 아동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근본원인을 고려해야 함을 유념한다.

이 의정서의 이행과 무력분쟁에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사회심리적 재활을 위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한다.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 특히 아동 및 아동피해자의 참여를 장려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 조

1. 당사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8조 제3항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이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 자발적으로 자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제38조 제3항의 연령보다 높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자국 군대에 자발적 입대가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이러한 입대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를 담은 구속력 있는 문서를 기탁해야 한다.
3. 18세 미만 아동에게 자국 군대의 자발적 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안전조치들을 유지해야 한다.
 - 가. 입대가 순수하게 자발적일 것
 - 나. 입대가 당사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통보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
 - 다. 입대하려는 아동이 이같은 병역 관련 의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
 - 라. 입대하려는 아동은 병역 근무를 수락받기 전 연령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입대와 관련된 조치를 언제든지 강화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통지받은 사실을 모든 당사국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러한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5. 입대연령을 높이라는 이 조 제1항의 요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당사국의 군대가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4 조

1. 국가의 정규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18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은 위와 같은 아동 징집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범죄화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조치 채택 등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항의 적용은 무력분쟁의 당사자 중 어떤 측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 조

이 의정서의 어떤 내용도 아동의 권리 실현에 보다 큰 도움이 되는 당사국 법률이나 국제문서 또는 국제인도주의법상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6 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이 의정서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원칙 및 규정들을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성인 및 아동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이 의정서에 반해 징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된 아동의 제대와 병역 해제를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등 의정서 이행에 협력해야 하며, 기술적 협력 및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등 피해를 입은 아동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한 원조 및 협력은 관계당사국 및 관련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된다.
2. 원조할 능력이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간, 양자간 협정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보다도 유엔총회규칙에 의해 설립된 자발적 기금을 통해 이러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서 발효한 후 2년 내에, 무력분쟁 참여와 징집에 관한 규정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비롯해 의정서 규정 이행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포괄적 보고서의 제출 이후, 각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의정서의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받아야 유효하며,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비준서나 가입서는 유엔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사무총장은 협약 및 의정서의 수탁자 자격으로 모든 협약 당사국과 협약 서명국에게 제3조에 따른 각 선언문을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1. 이 의정서는 10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 있을 지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들은 의정서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1개월 후 발효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해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시킬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후 협약의 다른 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해당 통지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기간의 만료 시 폐기를 통고한 당사국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폐기는 무력분쟁의 종료 이전에는 발효하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폐기는 해당 폐기의 발효 일자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해 당사국을 이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해당 폐기가 발효하기 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검토 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 검토를 방해할 수 없다.

제 12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여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고, 이를 검토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하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며 승인을 위해 유엔에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할 때 발효된다.
3.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국은 계속해서 이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받아들인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제 13 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정본으로 동등하게 만들어져 유엔문서보 관소에 기탁된다.
2.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협약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 의정서의 공인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현황

2006년 5월 현재 192개국

국 가	비준일	국 가	비준일	국 가	비준일	국 가	비준일
가나	1990. 2. 5.	모로코	1993. 6. 21.	스페인	1990. 12. 6.	지부티	1990. 12. 6.
가봉	1994. 2. 9.	모리셔스	1990. 7. 26.	슬로바키아	1993. 5. 28.	짐바브웨	1990. 9. 11.
가이아나	1991. 1. 14.	모리타니	1991. 5. 16.	슬로베니아	1992. 7. 6.	차드	1990. 10. 2.
감비아	1990. 8. 8.	모잠비크	1994. 4. 26.	시리아	1993. 7. 15.	체코	1993. 2. 22.
과테말라	1990. 6. 6.	몰도바	1993. 1. 26.	시에라리온	1990. 6. 18.	칠레	1990. 8. 13.
바티칸 시국	1990. 4. 20.	몰디브	1991. 2. 11.	싱가포르	1995. 10. 5.	카메룬	1993. 1. 11.
그레나다	1990. 11. 5.	몰타	1990. 9. 30.	아랍에미리트	1997. 1. 3.	카보베르데	1992. 6. 4.
그루지야	1994. 6. 2.	몽골	1990. 7. 5.	아르메니아	1993. 6. 23.	카자흐스탄	1994. 8. 12.
그리스	1993. 5. 11.	미얀마	1991. 7. 15.	아르헨티나	1990. 12. 4.	카타르	1995. 4. 3.
기니	1990. 7. 13.	미크로네시아	1993. 5. 5.	아이슬란드	1992. 10. 28.	캄보디아	1992. 10. 15.
기니비사우	1990. 8. 20.	바누아투	1993. 7. 7.	아이티	1995. 6. 8.	캐나다	1991. 12. 13.
나미비아	1990. 9. 30.	바레인	1992. 2. 13.	아일랜드	1992. 9. 28.	케냐	1990. 7. 30.
나우루	1994. 7. 27.	바베이도스	1990. 10. 9.	아제르바이잔	1992. 8. 13.	코모로	1993. 6. 22.
나이지리아	1991. 4. 19.	바하마	1991. 2. 20.	아프가니스탄	1994. 3. 28.	코스타리카	1990. 8. 21.
남아프리카공화국	1995. 6. 16.	방글라데시	1990. 8. 3.	안도라	1996. 1. 2.	코트디부아르	1991. 2. 4.
네덜란드	1995. 2. 6.	베냉	1990. 8. 3.	알바니아	1992. 2. 27.	콜롬비아	1991. 1. 28.
네팔	1990. 9. 14.	베네수엘라	1990. 9. 13.	알제리	1993. 4. 16.	콩고	1993. 10. 14.
노르웨이	1991. 1. 8.	베트남	1990. 2. 28.	앙골라	1990. 12. 5.	콩고민주공화국	1990. 9. 27.
뉴질랜드	1993. 4. 6.	벨기에	1991. 12. 16.	앤티가버부다	1993. 10. 5.	쿠바	1991. 8. 21.
니우에	1995. 12. 20.	벨루시	1990. 10. 1.	에리트레아	1994. 8. 3.	쿠웨이트	1991. 10. 21.
니제르	1990. 9. 30.	벨리즈	1990. 5. 2.	에스토니아	1991. 10. 21.	쿠제도	1997. 6. 6.
니카라과	1990. 10. 5.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993. 9. 1.	에콰도르	1990. 3. 23.	크로아티아	1992. 10. 12.
대한민국	1991. 11. 20.	보츠와나	1995. 3. 14.	에티오피아	1991. 5. 14.	키르기스스탄	1994. 10. 7.
덴마크	1991. 7. 19.	볼리비아	1990. 6. 26.	엘살바도르	1990. 7. 10.	키리바시	1995. 12. 11.
도미니카	1991. 3. 13.	부룬디	1990. 10. 19.	영국	1991. 12. 6.	키프로스	1991. 2. 7.
도미니카공화국	1991. 6. 11.	부르키나파소	1990. 8. 31.	예멘	1991. 5. 1.	타지키스탄	1993. 10. 26.
독일	1992. 3. 6.	부탄	1990. 8. 1.	오만	1996. 12. 9.	탄자니아	1991. 6. 10.
동티모르	2003. 4. 16.	북한	1990. 9. 21.	오스트레일리아	1990. 12. 17.	태국	1992. 3. 27.
라오스	1991. 5. 8.	불가리아	1991. 6. 3.	오스트리아	1992. 8. 6.	터키	1995. 4. 4.
라이베리아	1993. 6. 4.	브라질	1990. 9. 24.	온두라스	1990. 8. 10.	토고	1990. 8. 1.
라트비아	1992. 4. 14.	브루나이	1995. 12. 27.	요르단	1991. 5. 24.	통가	1995. 11. 6.
러시아	1990. 8. 16.	사모아	1994. 11. 29.	우간다	1990. 8. 17.	투르크메니스탄	1993. 9. 20.
레바논	1991. 5. 14.	사우디아라비아	1996. 1. 26.	우루과이	1990. 11. 20.	투발루	1995. 9. 22.
레소토	1992. 3. 10.	산마리노	1991. 11. 25.	우즈베키스탄	1994. 6. 29.	튀니지	1992. 1. 30.
루마니아	1990. 9. 28.	상투메프린시페	1991. 5. 14.	우크라이나	1991. 8. 28.	트리니다드토바고	1991. 12. 5.
룩셈부르크	1994. 3. 7.	세네갈	1990. 7. 31.	이라크	1994. 6. 15.	파나마	1990. 12. 12.
르완다	1991. 1. 24.	세르비아몬테네그로	2001. 3. 12.	이란	1994. 7. 13.	파라과이	1990. 9. 25.
리비아	1993. 4. 15.	세이셸	1990. 9. 7.	이스라엘	1991. 10. 3.	파키스탄	1990. 11. 12.
리투아니아	1992. 1. 31.	세인트루시아	1993. 6. 16.	이집트	1990. 7. 6.	파푸아뉴기니	1993. 3. 2.
리히텐슈타인	1995. 12. 2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993. 10. 26.	이탈리아	1991. 9. 5.	팔라우	1995. 8. 4.
마다가스카르	1991. 3. 19.	세인트키츠네비스	1990. 7. 24.	인도	1992. 12. 11.	페루	1990. 9. 4.
말셜제도	1993. 10. 4.	솔로몬제도	1995. 4. 10.	인도네시아	1990. 9. 5.	포르투갈	1990. 9. 21.
마케도니아	1993. 12. 2.	수단	1990. 8. 3.	일본	1994. 4. 22.	폴란드	1991. 6. 7.
말라위	1991. 1. 2.	수리남	1993. 3. 1.	자메이카	1991. 5. 14.	프랑스	1990. 8. 7.
말레이시아	1995. 2. 17.	스리랑카	1991. 7. 12.	잠비아	1991. 12. 6.	피지	1993. 8. 13.
말리	1990. 9. 20.	스와질란드	1995. 9. 7.	적도기니	1992. 6. 15.	핀란드	1991. 6. 20.
멕시코	1990. 9. 21.	스웨덴	1990. 6. 29.	중국	1992. 3. 2.	필리핀	1990. 8. 21.
모나코	1993. 6. 21.	스위스	1997. 2. 2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992. 4. 23.	헝가리	1991. 10. 7.

* 2006년 현재까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소말리아 2개국 뿐입니다.

소말리아는 비준할 만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미국은 1995년 2월 16일 서명을 하고 비준의사를 표하고 있지만,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 참여단체 : 굿네이버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은평천사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한국사회정보연구원,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홀트아동복지회,
- 개인회원 :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숙 아동정책조정위원, 연홍숙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자문위원, 임송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E-mail : uncrncpo@naver.com

회장 박동은_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T. 735-2310 F.738-8504
사무국장 김인숙_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69-2 세이브더칠드런 T.336-5242 F.336-6232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